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김 혜 정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 III. 법과대학 교육과정의 개편방안
- IV. 법과대학 교육의 향후 과제
- V. 맺음말

【국문초록】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법과대학은 2008학번 신입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뽑지 않고 임시법학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과대학의 유지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2011학년도까지만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법과대학에 잔존해 있는 법과대학생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2012학년도부터 법과대학을 완전 폐지할 경우,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현재 법과대학을 2017학년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에서도 앞으로 어느 기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것이며,

또 그에 따른 법과대학생들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법과대학의 학생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야 그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교육의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진 현재의 상황에서 학부법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급적 2017년까지는 법과대학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남아 있는 법과대학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그에 따른 법과대학 교원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법과대학 학생들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과대학생들의 관점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학업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I. 들어가는 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그러한 논쟁의 결과,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비록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여러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지 못한 문제점은 있지만, '세계화·개방화·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및 공급방식'¹⁾에 대한 기대 속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²⁾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 영남대학교에서도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법과대학은 2008학번 신입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뽑지 않고 임시법학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법과대학은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신청할 당시 임시법학부로 운영되는 법과대학을 2014년 2월까지 유지할 계획을 인가신청서

* 투고일 : 2012.06.08, 심사완료일 : 2012.06.21, 게재확정일 : 2012.06.24

1)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 2004, 13면 참조.

2) 하재홍,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2호, 2010, 274면 참조.

에 담은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법과대학을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한 대학의 법과대학에 잔존해 있는 법과대학생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2012학년도부터 법과대학을 완전 폐지할 경우,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현재 법과대학을 2017학년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법과대학 유지기간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과대학에서도 앞으로 어느 기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것이며, 또 그에 따른 법과대학생들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법과대학의 학생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야 그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II), 현재 법과대학의 재학생 현황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법과대학 교육과정의 개편방안을 제시해본 후에(III), 그에 따른 법과대학 교육의 향후 과제를 검토하면서 그러한 법과대학의 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IV)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과대학의 학사운영은 교내외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거의 제도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사실 지방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나름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지방 법과대학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사기는 매우 낮은 편이고 그에 따른 노력의 부족과 성과의 미약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

그렇다보니, 법학교육은 뚜렷한 비전 없이 진행되며, 교수 개인의 노력에 의

3)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2006, 136면 참조.

존하면서 일상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수준에 그쳤다. 즉 지방 법과대학 학생들의 비전부재의 상황은 노력부재를 낳고 이는 성과부재와 패배주의를 낳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 법과대학의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함께 법과대학의 폐지과정을 밟고 있는 지방 법과대학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비록 과거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졌던 법학교육이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법률가를 배출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법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소위 ‘법’이라는 것은 취업을 위한 기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학이 법률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학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상,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것이요,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은 민주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정도의 법률소양을 갖추는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법학은 현대인의 필수교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따라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시민의 자기생존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차원에서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학교육을 위해 기초법 관련과목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적인 실체법과 권리주장에 필요한 절차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생존기반과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⁵⁾

또한 지방 법과대학에서는 이러한 원론적인 관점에서의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반드시 취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그러한 목표에 걸맞은 교육내용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법과대학이 비록 몇 년 이내에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법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4) 이상수, 앞의 논문, 142면 참조.

5) 로스쿨 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학부에 법과대학이 존속해야 할 근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이 옳고 학부에서의 법학은 교양법학으로 존속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이상수, 앞의 논문, 144면).

III. 법과대학 교육과정의 개편방안

1. 현재 법과대학의 재적생 현황

우리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된 이상, 법과대학은 법률⁶⁾에 따라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과대학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올바른 법학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처럼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대학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2년 6월 13일 현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재적생은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6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현재 법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350명, 휴학 중에 있는 학생이 31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휴학생의 비율이 전체 재적 학생의 약 4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이 단시간 내에 종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전체 재적생 중에는 4학년이 428명, 3학년이 174명, 2학년이 55명, 1학년이 9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3-4학년 학생이 전체 재적생의 90.4%(602명)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1-2년의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요구되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재적생의 약 90%를 차지하는 3-4학년 중 43.5%(262명)의 학생이 아직 휴학 중에 있는 부분과 휴학생 중에 아직 1학년 학생이 9명 남아있는 부분은 향후 원만한 법과대학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의 상담 및 지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마도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고 있는 법과대학에서 우리 대학과 유사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과대학 폐지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표 1> 법과대학 재적생 현황(2012. 6. 13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재학생	350	267	83	0	0	0	10	10	0	89	82	7	251	175	76
휴학생	316	241	75	9	9	0	45	44	1	85	68	17	177	120	57
총계	666	508	158	9	9	0	55	54	1	174	150	24	428	295	133

2. 교육과정의 개편에 대한 기본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우리 법과대학의 재적생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대학에서 남아 있는 법과대학생들을 위해 어느 정도 내지 어떤 방향에서 법학교육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즉 법과대학의 원만한 폐지를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방안이 요구될 것이고, 그러한 후속조치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교육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을 갖고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7학년도까지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유지 하되 임시법학사과정 운영기간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② 법과대학을 폐지함에 있어 법과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③ 특히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동안, 적어도 매학기 개설과목의 50% 이상을 법과대학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함⁷⁾으로써 법과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하여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는 법학교육의 수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7) 이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기준에서 요구되는 내용으로 법과대학생의 요구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2011. 11, 170면 참조).

3.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편방안

1) 법과대학 유지 연한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을 갖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살펴볼 때,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7학년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되, 구체적인 유지 연한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정의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과대학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법과대학의 유지 연한을 검토함에 있어, 우선 남자 법과대학생들의 군복무에 따른 휴학기간 3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일반휴학기간 3년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마지막 신입생인 2008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17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8년 2월에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가급적 법과대학의 유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대학 전체의 관점에서 요구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법과대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2017학년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졸업학점의 축소

이처럼 2017학년도까지 법과대학을 유지한다면, 2018년 2월 졸업과 함께 영남대학교에서 법과대학은 폐지되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법과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의 수는 600명을 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 약 47%에 해당하는 316명의 학생이 휴학상태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휴학생들이 언제 복학을 하여 교육을 받게 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졸업생의 배출을 위해서는 과도한 졸업학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졸업학점이 축소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던 일부학생들이 자동졸업자에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정책

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2년 5월 18일부터 전체 법과대학 재적생을 상대로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찬반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현재 2007학번까지는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것에 반해 2008학번 학생의 졸업학점은 140학점으로 구별되어 있어 졸업학점의 축소에 있어 이원적인 정책의 결정이 요구되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재적생의 73.3%인 488명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졸업학점축소에 대한 정책은 가급적 전체학생의 동의와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설문조사기간을 2차에 걸쳐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비율이 높지 않아 부득이 3차 연장 시에 설문응답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설문응답하지 않는 경우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SMS⁹⁾를 통해 고지함으로써 설문응답을 최대한 독려함과 함께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비율이 73.3%에 머물렀다는 점에는 아쉬움이 있다.

<표 2>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설문응답결과(2012.5.18 현재 재적생 기준)

(단위 : 명, %)

구 분	대상자수(%)	응답자수(%)
재학생	350 (100.0)	282 (80.6)
휴학생	316 (100.0)	203 (64.2)
총 계	666 (100.0)	488 (73.3)

졸업학점을 현재 150학점인 경우는 140학점으로, 그리고 현재 140학점인 경우는 130학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성 89.1%(435명), 반대 10.9%(53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8) 1차 설문조사 : 2012. 5. 18(15:00) - 2012. 5. 25(15:00) 응답률 약 65%

2차 설문조사 : 2012. 5. 25(15:00) - 2012. 5. 30(24:00) 응답률 약 68%

3차 설문조사 : 2012. 5. 31(09:00) - 2012. 6. 3(24:00) 응답률 약 73%

9) 2012년 6월 1일 문자메세지를 통해 설문응답하지 않는 경우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고지하였다.

의 법과대학 학생들이 졸업학점 축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학점 축소에 반대한 53명의 학생 중 9명은 전면 반대가 아닌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이유는 “2008학번만 적용”, “모든 학번 수용바람”, “학번에 따른 차등적용 없이 모든 학번을 130학점으로 축소바람”, “2007학번만 축소하는 것에 찬성하고, 2008학번은 굳이 더 학점을 줄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2007학번까지도 130학점으로 축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등의 의견으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반대의견을 선택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찬성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일부 의견을 반영하면 졸업학점 축소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찬성함을 알 수 있다.

<표 3>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찬반 조사결과 (단위 : 명, %)

구 분	계	찬성	반대
재학생	282 (100.0)	248 (87.9)	34 (12.1)
휴학생	203 (100.0)	187 (90.8)	19 (9.2)
총 계	488 (100.0)	435 (89.1)	53 (10.9)

졸업학점 축소에 따라 이수학점의 기준도 변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아래의 <표 4> 및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졸업학점이 15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이수학점기준은 현재 140학점의 이수학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졸업학점이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이수학점기준은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130학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단과대학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법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공학점의 축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표 4> 2007학년도까지 입학생의 졸업이수학점

내용		현행	개편(안)	비고
졸업학점		150학점	140학점	10학점 축소
전공학점	단일	63학점	최소 53학점	현행 140 졸업학점과 동일한 수준 유지
	복수	45학점	최소 42학점	
교양학점		35학점	최소 35학점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학점 18학점 최대 21학점	기준학점 18학점 최대 21학점	현재와 동일 유지

<표 5> 2008학년도 입학생의 졸업이수학점

내용		현행	개편(안)	비고
졸업학점		140학점	130학점	10학점 축소
전공 학점	단일	53학점	최소 53학점	현재와 동일 유지
	복수	42학점	최소 42학점	
교양학점		35학점	최소 33학점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모든 학과와 동일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학점 18학점 최대 21학점	기준학점 16학점 최대 19학점 ¹⁰⁾	130학점 학과와 동일

3) 교육과정 개편안

앞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개편과 함께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운영은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운용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와 함께 법학대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폭넓게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요구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의 요구가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가급적

10) 장학금 신청기준도 수강신청가능학점의 기준학점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양자를 충족할 수 있는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전제로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을 생각할 때,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학년 교과목은 2012학년도까지 개설하고, 2학년 교과목은 2013학년도까지 개설하고, 3-4학년 전체 교과목은 2014학년도까지 개설하고,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는 4학년 교과목 중 법학전공 교과목만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경찰법무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찰법무전공에 해당하는 교과목까지 개설하는 것은 결국 법과대학 교원에게 상당한 강의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교육과정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설과목의 수는 재적 학생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표 6> 2012-2015학년 교육과정 개편안

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	변경내용
2012	전학년 교과목 유지	
2013	2-4학년 교과목 유지	1학년 7개 과목(20학점) 폐지 ¹¹⁾
2014	3-4학년 교과목 유지	2학년 13개 과목(37학점) 폐지 ¹²⁾
2015	3-4학년 교과목 중 법학전공 교과목만 유지	3-4학년 전공선택 중 경찰법무전공 25개 과목(65학점) 폐지 ¹³⁾
2016	2015년도와 동일 유지	1. 재적인원을 감안하여 개설과목을 결정함 2. 부족한 전공 교과목은 천마인재학부에서 개설되는 동일 교과목으로 이수하여 보충할 수 있음
2017	2015년도와 동일 유지	

11) 1학년 7개 과목(20학점) 교과목 내용

1학기	2학기
민법총론(1)(3), 법학개론(3)	물권법(1)(3), 헌법기초이론(3), 형법기초이론(3), 기본권일반론(3), 민법총론(2)(2)

12) 2학년 13개 과목(37학점) 교과목 내용

4. 교육과정의 개편내용에 대한 확실한 공지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의 개편은 학칙의 변경 등 일련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방안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게 되면, 개편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법과대학생들에게 정확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 법과대학생이 변경된 교육방안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방안의 운용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서 원만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법과대학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 첫째, 법과대학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둘째, 모든 법과대학 재적생에게 우편으로 그 내용을 송달하고, 셋째, SMS를 통해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개정내용을 확인하도록 독려하고, 넷째, 법과대학생이 자신의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 법과대학 교육과 법과대학생의 졸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법과대학 교육의 향후 과제

1. 법과대학 정체성 확보 및 학생들의 목표의식 제고

1학기	2학기
국제법(1)(3), 형법총론(3), 경찰학개론(2), 농업법(3), 물권법(2)(3), 영미법(2), 헌법(2)(3)	상법총론(3), 채권총론(3), 행정법총론(3), 개별기본권론(3), 국제법(2)(3), 형법각론(3)

13) 3-4학년 경찰법무전공 25개 과목(65학점) 교과목 내용

	1학기	2학기
3학년	경제법(3), 경찰법(2), 국제거래법(3), 국제경제법(3), 법사상사(3), 비교헌법(3), 사회복지법(2), 형사정책(3)	경찰행정법(2), 국제경제법연습(3), 언론정보법(2), 지적재산권법(3), 형사연습(3)
4학년	보험해상법(3), 세법(3), 지방자치법(2), 헌법소송(2), 형사법특강(2), 환경법(2)	국제거래법연습(2), 국제법연습(3), 노동법연습(3), 영미계약법(3), 유럽통상법(3), 행정법연습(3)

비록 우리 법과대학이 2017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법학교육의 수행은 반드시 요구된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법과대학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고 종래 판·검사 등 법조인 양성의 중심이 되었던 법과대학의 역할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넘어가면서 법과대학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법과대학도 2009학년도부터 법과대학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재학생이 점차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과운영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전체 법과대학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심지어 학생들이 자궁 심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바른 법학교육을 위해 법과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법과대학 학생들의 목표의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법학교육의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법학교육의 사회적 수요와 법학교육 담당자들의 의식에 따라 좌우된다. 법학교육의 사회적 수요는 비단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법조인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법률전문가인 준법조인, 그리고 법무사·세무사 등의 유사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¹⁴⁾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한 법학교육의 목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하면 법학교육 담당자들의 의식도 법학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사 법학전문대학원이 우수한 전문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과대학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법과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그에 따른 법과대학생들의 목표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도교수가 학생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매우 큰 자부심과 긍지감, 존재감 등을 얻게 된다고 한다.¹⁵⁾ 비록 전문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사회적 법률수요에 따르는 학부법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목표설정과 그에 따른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¹⁶⁾

14) 최송화, “법과대학의 학과체계와 교과과정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1호, 1992, 56면 참조.

15)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생 취업대책 및 진로지도를 위한 조사·분석 보고서, 2012. 4. 16, 36면 참조.

16)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1, 230면 참조.

2.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검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현재 우리 법과대학의 교육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면 역시 학부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제기될 수 있는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현실적인 진로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보았다.¹⁷⁾ 그 결과, 법과대학 학생들은 사법시험 등 국가공무원 시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⁸⁾ 물론 과거에 비하여 국가시험에 대한 관심이 다소 감소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기업체 취업보다는 공무원 내지 자격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졸업을 유예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취업준비를 위한 높은 수준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추세이고, 이를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외부에서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국가시험준비를 위해서도 서울의 신림동이나 노량진 등에서 학원을 통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효과적으로 국가시험 등 취업준비를 함으로써 취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과대학에서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고 정규 교과목 개설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17) 본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현재 법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35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시간 등을 활용하여 실시되었고, 총 272명(76.6%)이 동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앞의 보고서, 8면 이하 참조).

18) 동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진로방향으로 사법시험 등 고시를 생각하는 비율이 11.2%,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을 생각하는 비율이 52.3%로 여전히 고시 및 공무원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앞의 보고서, 13면 참조).

3. 법과대학 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연계

앞에서 언급한 올바른 법학교육의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충분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과대학교육 개편방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법과대학에 개설되는 과목의 50%를 법과대학 전임교원이 전담함으로써 학부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과대학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학기에 2개 과목을 강의하면서 추가로 법과대학에서 1개 과목을 강의하는 시스템은 전임교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이는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법과대학에 개설되는 교과목의 50%를 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과대학의 강의부담을 기준으로 적절한 강의시수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가급적 강의부담이 일부 특정 교과목 내지 일부 특정 교원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균등하게 부담을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학생 수와 관련하여 - 물론 휴학생 비율이 낮지 않아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1-2년 안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업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앞의 <표 6>에서와 같이 교육과정이 점차 축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3학년도부터는 한 학기에 개설과목을 20개 과목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곧 전임교원의 법과대학 강의부담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강의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① 전임교원의 법과대학 강의비율을 50%로 유지하면서, 20개 과목 이하의 법과대학 과목 개설을 전제로 할 때, 매 학기 약 10명의 전임교원이 법과대학 강의를 부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3학기에 한번은 법과대학 과목을 담당하는 것에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된다.

② 법과대학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강의는 1개 과목으로 그 부담을 줄이고, 다른 교원은 의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개 과목을 담당함으로써 균등한 부담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된다.¹⁹⁾ 이러한

과정을 3명의 교원을 가정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강좌분담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7>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강좌분담 방식

	담당교원	개정 전 담당과목	개정 후 담당과목	비고
2013학년 1학기	甲	로스쿨 A과목	법과대학 과목	<u>일반대학원 및</u>
		로스쿨 B과목	로스쿨 B과목	<u>전문박사 담당</u>
	乙	로스쿨 A과목	로스쿨 A과목	로스쿨 2과목
		로스쿨 B과목	로스쿨 B과목	
	丙	로스쿨 A과목	로스쿨 A과목	로스쿨 2과목
		로스쿨 C과목	로스쿨 C과목	
2013학년 2학기	甲	로스쿨 D과목	로스쿨 D과목	로스쿨 2과목
		로스쿨 E과목	로스쿨 E과목	
	乙	로스쿨 E과목	법과대학 과목	<u>일반대학원 및</u>
		로스쿨 F과목	로스쿨 F과목	<u>전문박사 담당</u>
	丙	로스쿨 D과목	로스쿨 D과목	로스쿨 2과목
		로스쿨 G과목	로스쿨 G과목	
2014학년 1학기	甲	로스쿨 A과목	로스쿨 A과목	로스쿨 2과목
		로스쿨 B과목	로스쿨 B과목	
	乙	로스쿨 A과목	로스쿨 A과목	로스쿨 2과목
		로스쿨 B과목	로스쿨 B과목	
	丙	로스쿨 A과목	법과대학 과목	<u>일반대학원 및</u>
		로스쿨 C과목	로스쿨 C과목	<u>전문박사 담당</u>
2014학년 2학기	甲	로스쿨 D과목	로스쿨 D과목	<u>일반대학원 및</u>
		로스쿨 E과목	법과대학 과목	<u>전문박사 담당</u>
	乙	로스쿨 E과목	로스쿨 E과목	로스쿨 2과목
		로스쿨 F과목	로스쿨 F과목	
	丙	로스쿨 D과목	로스쿨 D과목	로스쿨 2과목
		로스쿨 G과목	로스쿨 G과목	

이상과 같이 강의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개설에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법과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각 전공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전공별 검토가 요구된다.

19) 이때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 1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균등한 부담의 관점에서 일반대학원 내지 전문박사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법학교육의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진 현재의 상황에서 학부법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경우 2017년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을 모두 아울러 올바른 법학교육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법과대학 학생들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과대학생들의 관점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학업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법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학부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취업률, 법학교육

참 고 문 헌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2011. 11.
-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 2004.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생 취업대책 및 진로지도를 위한 조사·분석 보고서, 2012. 4. 16.
-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2006.
-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2011.
- 최송화, “법과대학의 학과체계와 교과과정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1호, 1992.
- 하재홍,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2호, 2010.

[Abstract]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and Legal Education by Abolition of College of Law

Kim, Hye-Jeong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what will be the impact to the law colle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and more broadly what is to be done for the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Since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focus of the lega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drifting toward law school.

Concerning the legal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level in the university which has closed the law college to hold law school, my argument is that leg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s a liberal education for legal knowledge is a kind of necessities for the citizens in the complex modern society.

Because the current course of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compris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legal education and the basis for its existence is ensured by law, the talented people that the society demands should be fostered through change of curriculums that befit the trend of the times.

Key words : law school,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curriculums, ratio of employment